

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재정산한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3. 10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경 기 지 청 장



1. 건 명 :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1. 3. 10. ~ 2021. 3. 23.(14일간)
5. 의견제출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수원고용복지+센터 별관(2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F.0508-8230-023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수원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이미정(전화 031-231-785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불임]

임금피크제지원금 반환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1. 3. 10. ~ 2021. 3. 23.)

연번	대상자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김*성	1960.3.30.	임금피크제지원금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1,488,110원	527,200원	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 회수	폐문부재	(1차)화성시 화산로 1* ***동 ****호
								(2차)화성시 화산로 1* ***동 ****호